
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행법상 “근로자의 날”의 명칭을 “노동절”로 변경하고,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“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”로 함.

II. 검토의견

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은 정)